

서울시립대학교 『서울法學』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07. 8. 28.
전문개정 2007. 11. 30.
전문개정 2011. 2. 28.
전문개정 2017. 5. 10.
일부개정 2024. 7.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法學』 편집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法學』(이하 “『서울法學』”이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게재) 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法學』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게재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호의 논문을 서울법학에 게재한다.

1. 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또는 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와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의 논문
3.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 <개정 2024. 7. 31>
4. 지도교수 추천서가 첨부된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개정 2024. 7. 31>
5.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논문

② 『서울法學』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일이 없을 것
2. 연구윤리에 반하지 않을 것
3. 따로 정하는 「원고작성 및 논문투고요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3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서울法學』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심사대상 논문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 연구업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투고자에게 비밀로 한다.

제4조(논문의 심사기준) 『서울法學』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을 심사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주제의 명확성과 학술지와의 관련성
2. 구성체계의 적절성

3.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정연성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의 내용적 충실성·전달성 및 질적수준
7. 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의 적합성
8. 연구결과의 명확성과 기대효과
9.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5조(심사결과의 제출)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별표]의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4조의 심사기준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판정한다.

1. ‘그대로 게재’ : 수정 없이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2. ‘수정 후 게재’ : 경미한 수정·보완 후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3. ‘수정 후 재심사’ :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재심사가 필요할 때
4. ‘게재 불가’ :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심사결과의 확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그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어느 하나로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 요구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재심사) ①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호의 심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논문을 재심사하는 심사위원은 ‘그대로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만 판정하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 결과 ‘그대로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확정’으로 최종 판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가 재심사절차에 따른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제8조(결정에 대한 이의) ① ‘게재 불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접수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심사료의 부과 및 심사비의 지급)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심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7.8.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